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회: 2017.11.15.(수) 오후1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지하 1층)



사단
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법法센터

[선정사]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해 한 해 동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장애인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처음 사법부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일명 엄전노예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명백하게 장애인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선정된 판결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등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테마주제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양형기준에 대한 판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담은 이 책자가 전국 법원에 전해져서 법관들이 장애인 관련 사건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판결이 좋은 판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디딤돌 걸림돌 판정 선정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장애인권법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10.3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태곤**

목 차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 6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과정 - 8

디딤돌 판결

1. 면접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728 판결] - 12
2. 교육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8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누4361 판결] - 14
3.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계선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3473 판결] - 23
4.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 판결] - 27
5.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140 판결] - 30
6. 장애등급변경 처분으로 인한 장애인의 생계유지곤란을 인정하여 장애등급변경 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결정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야5101 결정] - 32
7.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가9 결정] - 36

걸림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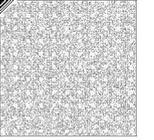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76, 7277 판결] - 42
2. 경계선 지적장애인 원고가 스스로 임금청구를 못할 정도의 제한능력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0995 판결] - 45
3. 2층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장애인 차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6603 판결] - 48
4.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506 판결] - 50

주목할 판결

1. 염전에서 12년간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되므로 노동상실률 40%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8305 판결] - 56
2. 지적 2급 장애인을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153 판결] - 61

테마 판결

1.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2575,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1008, 대전지방법원 2016나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4222 판결] - 66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양형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 수원지방법원 2015노6622,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56, 수원지방법원 2016노1363 판결] - 75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선정위원(가나다순)

김 예 원

-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현)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위원(현)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전)
-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익변호사(전)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김 용 혁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현)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변호사(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굿네이버스 등 사회복지단체 근무
-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 등 다수의 장애 관련 공익소송 수행

김 재 왕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현)
- 제4회 법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
-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박 김 영 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현)
- 장애여성공감 이사(현)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활동

배 복 주

- 장애여성공감 대표(현)
-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현)
-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전)
- 장애여성공감 창립(1998)

제 철 응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보건복지부 중앙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센터 책임자(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등 다수의 논문

최 정 규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현)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전)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엄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방안연구, 2017」, 「학대피해장애인지원체계 기반연구 2016」 등 공동연구 참여

최 현 정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현)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회 위원(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간사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하지현 장애인권법센터 실무수습 변호사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과정

선정 대상 판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선정 대상 판결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로,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선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가사소송은 제외하였고 심급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 행정 소송 판결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총 25개의 각급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 중 장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소송은 검색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하급심 판결이더라도 확정된 판결에 한해 판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을 수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와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하고 1차 선정된 판결 110건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판결 선정 과정

2017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위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위원회로 구성하여, 7월부터 선정 대상 판결 110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의 판결 선정 기준은 장애인 인권적 관점에서 ①판결의 영향력 ②장애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③장애에 대한 이해 ④장애에 대한 관점 ⑤참신성, 발전성 ⑥구체적 타당성 총 6가지의 기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판결 선정을 위해 각 위원들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디딤돌 판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림돌 판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주목할 판결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전체 과정이 아닌 판결문만으로 후보를 선정하다 보니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이 된 판결 중에서 장애인단체나 선정위원들이 직접 지원했던 사건과 언론에 알려진 사건인 경우에는 판결문 외에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객관성을 더했고, 그렇지 않은 판결들은 선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통해 사건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결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목할 판결 후보 중에는 장애인 사건의 주요 이슈이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법기관의 장애 인권 의식과 태도에 대한 주의 환기용으로 사건의 유사성과 판결의 공통적 이슈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테마 판결'로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선정 과정 끝에 선정위원회에서는 디딤돌 판결 7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테마 판결 9건 총 22건의 판결을 선정했습니다.





디딤돌 판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7개 판결입니다.

1. 면접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728 판결]
2. 교육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8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누4361 판결]
3.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계선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3473 판결]
4.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 판결]
5.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140 판결]
6. 장애등급변경 처분으로 인한 장애인의 생계유지곤란을 인정하여 장애등급변경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결정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아5101 결정]
7.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가9 결정]

면접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728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사실관계

원고(청각장애 2급)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인 00기술교육원(이하 '피고')의 조리외식과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고 싶었다. 그래서 피고에 전화하여 청각장애인이 조리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각장애인의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 지원자는 가산점이 있다고 답변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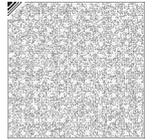
원고는 면접일에 배우자와 동행하였다.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길 원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필담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만 허락하였다. 피고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스스로 소리 내어 자기소개를 하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결국 원고는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킨 피고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¹⁾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면접 탈락 후 피고를 상대로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원고의 요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원고가 전화 문의를 통하여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였기에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험시간 연장, 문자통역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 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라 한다.



선정의견

김예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과연 무엇인지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법해석이다. 법에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 요구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시정권고 결정을 통하여 이 정당한 사유 중 '과도한 부담'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 편의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편의제공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 정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판결은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1) 정당한 편의 제공은 굳이 먼저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천명한 점, (2) 면접에 임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시한 점, (3) 장애를 원인으로 한 차별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 특히 환영할 만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서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제47조에서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차별행위를 한 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례로 인하여 이 법문언의 해석이 명확해 진 것이다. 다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애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청구' 부분이 취하되고 제46조의 '위자료 청구' 부분만 남아 해당 부분의 판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84, 광주고등법원 2016누4361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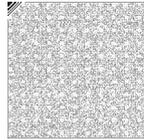
원고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언어장애를 동반한 자이다. 원고는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자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입학하였고 특수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후로부터 10년 동안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일명 임용고시에 응시하였지만 수차례 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 원고는 그동안 1차 시험(필기)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받아왔지만 2차 시험에서는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였고,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2차 시험 중 수업실연과목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마지막 관문인 심층면접과목에서 부적격판정을 받고 불합격함으로써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심층면접과목은 10분의 시간 동안 제시된 4개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었고, 교사로서의 소질,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원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는 편의제공을 받았지만 2차 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다. 2014년도 임용고시 공고 당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1차 시험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는 심층면접과목 시험 현장에서 급히 스케치북이라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시험 면접관은 원고의 요청을 허가해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1급 뇌병변 장애의 특성상 세밀한 손놀림이 어렵기 때문에 10분의 면접시간 동안 거의 스케치북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는 피고가 자신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스케치북을 이용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반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였지만 광주고등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었다.



선정의견

김용혁

채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연해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4%에 달하였고, 취업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들의 96.1%가 그냥 무시하거나 참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만연해 있던 장애인 차별행위에 타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기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채용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차별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이다. 이 사건 역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문제가 문제되었다. 해외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차별의 성립 요건과 각 요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해석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국내에서는 차별 여부를 파고들어가는 논리가 빈약하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원고가 심층면접과목을 시험 보는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함에 따른 차별을 받았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로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위의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분석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 이에 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툼이 되었던 쟁점은 크게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로 인한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 원고가 구체적 편의 제공을 요청했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요청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편의 제공 의무는 완성된 것인지 여부, 편의 제공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1에게 이 사건 면접과 관련하여 별도로 시험시간 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장애인 증명서류와 함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략)... 에 비추어볼 때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원고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구체적으로 편의 제공

선정의견

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장애 종류와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편의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이 사건 면접 당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허용한 스케치북은 원고가 일부 근육마비로 인하여 원활하게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보조기구로 볼 수 없어 이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장애 당사자의 요청대로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그 편의가 장애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광주고등법원의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후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광주광역시의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 제공 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모두 변경되었다. 원고는 10년 간 같은 시험을 보면서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부딪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본 판결은 원고 본인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준 소송이지만, 채용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판결로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절차를 바꾸고, 채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도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하고 지원했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도연 활동가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과 이와 관련해 광주지역의 연대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활동하고 계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연입니다. 저는 현재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인권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차법 제21조에 근거한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권 모니터링 사업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로 큰 이슈가 되며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집회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배경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사건 당사자는 제 대학 동기로 2014년 2월 취소 처분을 통지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1명의 장애인 교원을 뽑았던 시험이었고 높은 필기시험 성적으로 1차 시험에서 무난히 합격했지만, 2차 심층 면접에서 0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을 통지 받았습니다. 의사소통 보조기구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심층면접 과정과 취소를 통보 받은 것에 납득할 수 없어 고민하며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상담으로 접수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며 장애인교원심사소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자의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면서 장애인 시의원들과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담당하는 이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지가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원 임용 응시자에 대해 필기시험은 물론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진행된 심층면접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수를 매겼고 그 점수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통



인터뷰

지 받은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장애인 교원 심사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취소 처분 통지 이후 소위 구성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심의 과정에서도 '기자 앞에서 공개 시연'을 제안하는 등의 무리한 제안이 있었으며 결국 잘못된 불합격 처분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지역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장애인교원 심사소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을 조직하며 시 교육청이 1심 패소 이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조직하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1심, 2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10년 가까이 되풀이된 고질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 지금까지 차별이라고 느끼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임용 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차별이다'라고 분명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심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는 점도 그렇구요.

소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승소 이후 재차 치러진 심층면접에서 당사자가 요구한 AAC 프로그램과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나와야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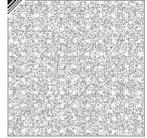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애인 교원 심사소위의 구성과 판단 기준을 분명히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차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립하는 것도 숙제라고 봅니다. 아울

러 현장에 배치된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근무 실태와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과정을 넘어 근무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0년 넘게 '공무원 시험'에서 실력을 갖추고도 차별 받았던 당사자였기에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임용된 장애인 교원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지원 없이 내던져진 공직 사회 장애인들이 자괴감을 느낄 만큼 내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유사한 차별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보다 널리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살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장혜정/사건 당사자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인 장혜정 씨에게 판결 이후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특수교사 임용고시에 도전한지 15년 만에 교사의 꿈을 이루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소송 판결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3월,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발령을 받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조립포장실 수업 및 도예공예실 팀티칭 수업, 도서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 업무 지원과 같은 일이에요.

소송 후 어렵게 얻은 재면접 기회였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철저히 했죠. 의사소통보조기구의 작동연습, 면접 답변 작성 타자연습, 면접대비 서적들을 정독하며 자정이 될 때까지 공부했어요. 집에서는 실제 정장을 갖춰 입고 면접멘트를 연습하는 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어색한 표정과 행동 그리고 문장을 수정하는 준비를 했어요.

특수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나의 자존감과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져 갔기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시험 준비를 그만 포기하라는 주위사람들도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죠. 나의 삶에서 법정에 선다는 것은 꽤 목직하고 드문 일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심리기일 당일엔 매번 법정에 나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판결 후 주변사람들이 많이 축하해 주었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주었어요.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첫 번째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마음에 온통 처참하고 슬프고 억울한 기분이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어와 스케치북을 이용하여 답변을 했는데, 면접 점수가 '0점'이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모욕감도 들고

화가 났어요.

소송 이후 재면접 과정에서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으셨나요?

마이토키 윈도우라는 AAC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 내용은 전부 면접 문제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당시 교육청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험에 사용할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를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들어보았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보조기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었어요. 면접시험 시간도 충분히 연장해 주었고요.

이 판결은 장애가 있는 시험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로서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절한 편의와 사회적인 태도'임을 확고히 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치한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은 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허용 및 특이사항, 문제지 형태 등의 편의 제공의 각 영역을 더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어요. 임용시험 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시험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만 같아 기쁘게 생각해요. 오랜 꿈을 어렵게 이룬 저로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함과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회가 없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애환경에서 정당한 편의(모든 턱 없애고, 저상버스 100% 도입 등)가 제공되고, 통합교육도 더 많이 실시해야 돼요.

인터뷰

교사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교육 현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의 삶과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른으로서 완전한 '독립'과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해요.

특수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계선 지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3473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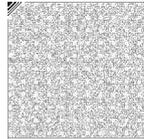
원고 A는 사건 당시 만 13세로 지능이 약 70정도 되는 경계선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청소년이다. 피고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원고 A가 집을 나와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A를 모텔에서 투숙하게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원고 A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4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치료비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심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²⁾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해당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가 가출로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궁박한 상태였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육체적·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정의견

배복주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만 피해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취지로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 걸림돌 판결(2015가단228013)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성매매와 성폭력행위
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
임을 인정하였다.

실제, 이 사건의 형사상 위법성을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가 아니라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를 이
용하여 간음한 행위로서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13세 2개월이 된 경
계선 지적 장애 청소년이 가출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해자가 모텔에서 성적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정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애초 수사기관
(경찰·검찰)이 아청법 제8조 적용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관계와 소통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방
어가 미약하다. 비장애성인 남성과의 대등한 관계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가 쉽게 이루어진다. 항소심 판결문은 가해자의 관계에서 취약한 피해자의 위치를 직시함
으로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

보통의 경우, 법원은 성매수 행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는다. 대다수의 성매매 관계에서 성매수 대상의 자발성에 기반한 관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문이 비록 아청법의 보호법익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관계에서 성매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취약성이나 위력관계를 폭넓게 살피를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인터뷰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십대여성인권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인터넷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비
영리민간단체로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이버포대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피해학생이 가출 1주일 만에 인천소재 공원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어머니는 피해자가 평소와 다
른 모습을 보이고 병원진료에서 성관계가 의심이 되는 진료결과로 인해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
고했어요.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에 남자 보호사로부터 또다시 성폭력 피해
를 입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성폭력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사
건으로 송치를 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던 것이 중단이 되어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가 진
행되고 있었고, 현재 가해자는 유죄 확정이 되어 복역중입니다.

피해자에게 수사나 법적 지원 이외에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요?

피해자에게 처음에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려는데, 공포감이 심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적장애청소년 캠프를 가도록 지원했어요. 이후
에도 부모 상담과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요. 병원진료도 연계하여 정기적으
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점차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
로 회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했음에도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잘
적응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청법에서 '성매수 대상청소년' 삭제에 대해 운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삭제가 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아청법에서 피해청소년/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은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적침해를 했다하더라도 가해자는 사회적 법익에 위배된 것이지 개인적인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지요. 아청법의 이런 문제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으로 법적 위치를 보장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가 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항소심 재판에도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힘들어 했고, 그걸 지켜 본 가족들도 힘들었지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고 있어요. 억울한 심정이 있었고, 이 결과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성인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사실관계

원고 A는 2003년 무렵부터 음성 틱 증상이 나타났고, 10여 년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2014년에는 모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원고의 병명을 투렛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진단하면서, 원고가 10년이 넘는 기간을 투병하면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음성 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정해진 장애인에 준하는 상태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이후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행정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 양평군수는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정해진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행정입법에 정해진 장애인에 준하는 정도로 정신적 장애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그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등록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되어 원고와 같은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입법에 의하여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정입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와 같은 틱 장애의 경우 다른 등록대상 장애인들과 구별하여 차별적인 취급사이에 실질적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대적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정의견

제철응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입법에 정해진 장애인에 준하는 정도로 정신적 장애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그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등록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되어 원고와 같은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입법에 의하여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정입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와 같은 틱 장애의 경우 다른 등록대상 장애인들과 구별하여 차별적인 취급사이에 실질적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대적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받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그 세부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틱 장애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되더라도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은 장애인 개인의 권리이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별표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2조의 장애인이 망라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를 정의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취지가 장애인의 복지, 자립, 사회활동참여를 증진시켜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 신체 및 정신상의 손상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이 그 손상이 자립과 사회활동참여에 어려움을 초래할 때 이를 장애로 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표 1은 장애를 신체 및 정신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수급권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별표 1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아니어서 사회보장급여수급권의 범위에서 배제되었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그것이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포함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 헌법 제107조를 해석하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이 없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부작위는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별표 1에 정의되지 않은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박탈당하더라도 다룰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고, 향후 의학적 판단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한 장애의 개념을 사회통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140 살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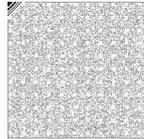
사실관계

지적장애 여성인 피고인 A는 형부에게 강간을 당하여 피해자를 출산했고, 피해자가 커가면서 형부를 닮아감에 따라 피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던 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이었던 이 판결도 징역 4년의 선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실시한 국립정신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피고인 A가 수사에 주의력을 유지한 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5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중 제2회 조사는 총 9시간 35분, 제4회 조사는 총 7시간 35분, 제5회 조사는 총 9시간 15분 동안 이루어졌고, 제1, 2회 조사와 제4, 5회 조사는 각각 연이은 날에 실시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해 피고인 A는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 6항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정의견

최현정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편의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적장애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기본적인 어휘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추상적 사고와 언어를 사용한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용어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많다. 비장애인도 그러하듯이, 수사과정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크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6조 제6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이었고,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A의 조사 과정에 국선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았다.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며칠 간 연이어 이루어졌다. A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검사는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판결은 1심 법원과 달리, 장애인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가 형부에 의한 강간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1심의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미가 있어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다.

장애등급변경 처분으로 인한 장애인의 생계유지곤란을 인정하여 장애등급변경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결정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아5101 집행정지

사실관계

원고 A는 3세경 뇌전증이 발병한 이후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본격적인 뇌전증 발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004년 처음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뇌전증 2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04년 9월 경 위 장애진단을 근거로 원고에게 뇌전증 장애 2급의 장애등급결정을 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자 장애등급변경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뇌전증 장애 2급이 계속 유지되었다.

원고 A는 위 변경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주된 이유는 장애등급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월 30만원 가량 받던 장애인 연금지원이 월 4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겨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례적으로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선정의견

최정규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受益的) 처분에 대해 국민은 그 처분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게 되며, 그 기대와 신뢰는 존중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처분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처분의 변경은 그 수익을 받고 있던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장애인인 약 12년 동안 뇌전증 장애2급 판정을 받고 행정청으로부터 소정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월 30만원 지급받던 장애인연금은 월 4만원의 장애수당으로 축소되었다. 해당 장애인에게 월 26만원 삭감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장애등급변경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변경된 처분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해당 장애인의 경우에도 등급변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승소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된 처분에 의거하여 월 26만원 삭감을 견뎌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정청의 이러한 변경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부는 일단 그 변경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은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직권으로 그 효력정지 기간을 25일 연장시켰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해당 장애인이 겪을 혼란상황에도 장애인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이러한 결정이 “디딤돌 판결”이 아닌 “보편적 판결”이 되길 희망해본다.

인터뷰

박길성/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본 결정을 선고하신 광주지방법원의 박길성 부장판사님께 이 결정에 대한 내용과 법원의 장애인 인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고하신 판결이 ‘2017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는데, 예상을 하셨는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오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 사실인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립된 법리와 건전한 상식에 맞는 결론인지, 또한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지 등입니다.

이 결정에서 신청인은 판결선고시까지 집행금지 신청을 했는데, 직권으로 효력정지 기간을 “선고 후 25일까지”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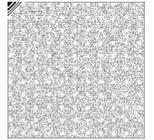
혹시라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판결 송달 기간과 항소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에 집행될 가능성에 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이 결정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니, 그러한 점이 오히려 사회적 파급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판결을 하셨을 텐데 특히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 재판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판단하시면서 특히 고민이 되시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서는 공립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불



합격 처분 취소 사건이 기억에 남는군요.

이 사건의 원고는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임용고시 중 특수교사 장애인구분 선발 국어과목에 응시했다 심층면접 평가위원 5인으로부터 ‘학생과의 언어적 소통이 매우 어렵고 비언어적 표현도 매우 부적절함을 고려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며 0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에서 부적격판정 결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교육감으로부터 불합격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취소 청구도 기각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인정사실³⁾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이 사건 면접에서 원고에게 시험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스케치북을 제공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면접은 이 사건 시험규칙,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손해배상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장애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나아갈 방향이나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다만, 장애인들도 우리사회의 공동구성원들이어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으며, 희망을 간직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사법부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 디딤돌 2번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4361 판결」 참조.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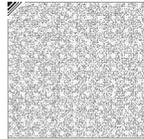
헌법재판소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2013년 그 보호의무자인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구제청구 사건 계속 중인 2014.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제청신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절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선정의견

제철웅

헌법재판소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족이나 부양의무자들이 성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폐쇄시설에 감금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사법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으로 성인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입소시키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매환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며, 성인지적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관행에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고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이를 한 단계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장애인(치매환자를 포함)은 자신의 개인의 사적 권리와 공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장애인이 가진 권리는 그의 권리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소진하여 상속으로 남길 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가족의 권리라고 착각하여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사용해 왔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규정도 거기에 일조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이 나라의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삶의 영위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묵살하는 관행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기에 최초로 경종을 울린 사법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논의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고, 그 점에서 디딤돌로 선정하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을 것이다.



선정의견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리는 여전히 장애인을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논리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논의를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과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단도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과연 그 수단이 정당한지도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점검하기 위해 고려한 보호의무자와의 이해상충, 장애인의 의사확인절차, 불복절차 등에 관한 논리도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향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누구 못지 않게 존엄한 한 인간인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의 의사에 반한 비자의입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림도 판결 프로그램 판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거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거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4개 판결입니다.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76, 7277 판결]
2. 경계선 지적장애인 원고가 스스로 임금청구를 못할 정도의 제한능력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0995 판결]
3. 2층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장애인 차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6603 판결]
4.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506 판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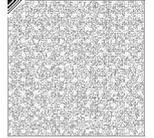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76, 7277 폭행치사 등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이다. 해당시설에서 A는 피해자 H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멍살을 잡고 수회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팔을 폭행하거나 발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앉아 강제로 약을 먹여 폭행을 가하는 등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동 장애인 시설 소속 생활재활 교사로 시설 거주 장애인인 피해자 K가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자 안전방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는 등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강하게 힘을 주어 완력으로 이를 제압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골절에 이르게 한 뒤 결국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며 이 사건 대부분의 행동이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하면서 피고인들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선정의견

김재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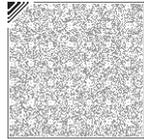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신체적 개입은 최후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은 최저기준의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저기준의 원칙에 따라 신체적 개입을 하려면 종사자는 신체적 개입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종사자는 거주 장애인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바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에게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종사자의 재량이 숨어 있다. 불가피하다는 표현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해나 타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물리력은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이유는 ‘옷을 벗고 다닌다’, ‘다른 장애인을 괴롭힌다’, ‘출입문을 발로 찼다’, ‘욕실에서 물장난을 한다’,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물티슈를 입에 물었다’ 등이었다. 종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물리력 행사의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사소한 행동도 자해나 타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종사자가 자해나 타해가 있는 경우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저기준에서 제시한 최후수단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선정의견

안타깝게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도 장애인에게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현혹되곤 한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되고, “이 사건 대부분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타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자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 제재적 성격으로서,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며 피고인을 선처하였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다른 관심사를 제시하였는지 등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던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판단 없이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종사자에게 물리력 사용의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무딘 판단으로는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을 예방할 수 없다. 게다가 반작용으로 종사자가 아예 신체적 개입에 나서지 않는 방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걸림돌이다.



경계선 지적장애인 원고가 스스로 임금청구를 못할 정도의 제한능력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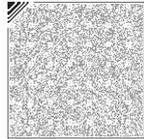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0995 임금 등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임금을, 예비적으로 준사기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소송에서 원고가 지능 70정도의 경계선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능력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7년 동안 원고를 고용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제한능력자에 버금가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실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만약 원고주장처럼 원고에게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면 원고의 소송대리 수권행위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를 약식 기소하였는데 원고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적시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간의 최저임금상당의 임금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김재양

지적장애인은 누구에게 조력을 받느냐, 그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권리행사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조력을 받으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을 억압하는 사람에게 조력을 받으면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들은 대부분 후자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을 이용하곤 한다.

임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임금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시효기간 안에 임금 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은 사용자의 억압에서 벗어난 뒤에 다른 조력자의 지원을 받으며 임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시효기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은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사용자)는 근로 제공 과정에서 채권자(근로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임금은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채무자보다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체불임금 사건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용자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고도 시효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된다.

이 사건은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제도가 악용된 사건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나아가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례적으로 만약 원고 주장처럼 원고에

게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면 원고의 소송대리 수권행위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를 약식 기소하였는데, 원고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이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확일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가 지적장애와 의사결정지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사건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2층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장애인 차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6603 손해배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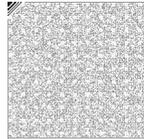
사실관계

원고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2015. 12. 29. 피고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는 서울 및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위 버스에 탑승 당시 해당 버스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길이 1.3m이상, 폭 0.75m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아 전용공간에서 방향전환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되어 차별적 취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0.75m 이상 확보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우선 피고에게 교통약자법상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용한 버스는 자동경사판이 아닌 수동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 통로면의 차실천장 높이가 1,900mm에 미달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급되는 저상버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접이식 좌석을 접어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수동식 경사로를 통해 버스기사가 휠체어 이용 승객의 탑승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차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2층 광역버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최정규

법은 상식이다. 법도 인간이 만든지라,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법은 보완되어야 하고, 보완되기 전에는 해석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법은 조롱당하기 일쑤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기도 2층 광역버스', 누가 봐도 '저상버스'인데,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 측은 '저상버스'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저상버스'라고 하는데, 그게 상식인데, '저상버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유추해석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아울러 재판부가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 차별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한 부분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아직도 장애인이 당연히 누리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 2024338호) 진행 중이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진행되지 못한 검증기일(2017년 9월 22일)이 최근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과 '장애인 이동권'이 헌법상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기를 기대해본다.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506 직권면직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A는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주막하 출혈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질병휴직을 한 뒤 복직하였다.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아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유치원 교사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을 냈고, 피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공무원이 재직 중 입은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업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 면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건강상태로 보아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원고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소정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고,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관련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각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유치원 교사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달리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고를 면직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다거나 장애인 고용이나 복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보호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최현정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보직변경,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유치원 교사는 원아를 직접 교육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직이 없으며,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은 해당 지역 원아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교육훈련기회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진 질병에 대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질병휴직 기회를 이미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의견을 냈고, 피고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직권 면직하였다.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사유의 핵심은 원고가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현재 “유치원 교사”는 원아 지도 외의 다른 보직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가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 보직(교육전문직원, 행정업무 전담기관 파견 등)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원고의 신분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고의 현재 신분으로는 다른 직무로의 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일정한 교육훈련 기회나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다른 직무로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원고가 수행 가능한 다른 직무로 배치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질병휴직이 교육훈련기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질병휴직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간이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다른 직무로의 재배치를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로 미국 장애인법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한 “직무의 재배치”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하나로 명시하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정의견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은 장애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사실 장애인은 의학적 손상 그 자체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적절한 보조기구나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수행 가능한 직무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깊이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주목할 판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주목할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2개 판결입니다.

1. 염전에서 12년간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되므로 노동상실률 40%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8305 판결]
2. 지적 2급 장애인을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각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153 판결]

염전에서 12년간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되므로 노동상실을 40%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8305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 A는 지능지수 64인 지적장애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년경부터 2014년 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일 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1년 원고를 2회 폭행 한 적이 있다. 피고는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되어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3년경부터 2014년 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 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 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농촌일용노 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 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임금은 이 사건 염전에서 피고에 게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4에 불과하고 사회성숙도의 지수가 27에 불과한 점, 이에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당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은 원고의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손해배상 2억원 상당 중 형사 합의금으로 기지급한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정의견

최정규

한 사람의 노동능력을 평가하여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것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사직종에 근무관련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2014년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이후 각종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장애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를 상 대로 부당하게 착취한 소득을 이제라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의 잃어버린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피해 장애 인은 염전(농촌)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였기에 당연히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판단은 "최저임금"기준이었다(광주지방법원 목 포지원 2015가합 11231외 7건).

(참고로 2014년 1월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은 금 1,170,460원이고, 농촌일용노임으 로 계산한 금액은 2,337,675원으로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한 것이 최저임금 계산한 것의 약 2 배에 이르는 차이가 난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을 적용된 판례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이 종사한 농·어업분야는 고도의 지적활동이 필요한 분야 가 아님에도 구체적인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지적장애인이기에 40%의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장애인 차별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 장애인이 노동력착취로 인해 잃어버린 소득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 대'당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를 끝까지 주목 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은 해당 장애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고등법 원 2017나 12010)

인터뷰

김동식/소송 원고

사건 당사자이신 김동식씨와 김동식씨의 공공후견인 국민우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동식씨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을 하신 탓인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셔서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국민우 선생님이 인터뷰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후견인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식씨의 후견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우라고 하고, 현재 행촌복지재단 산하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염전에서 나온 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일을 나가고 돌아오면 같은 아파트 1층에 사시는 형님과 활동보조인을 자주 만나요.

후견인 김동식씨는 2015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활동보조인과 마음이 잘 맞아서 활동보조인이 지원되는 시간에 구매받지 않고 낮이든 밤이든 오셔서 집안 청소나 음식을 해주세요. 주로 김동식씨가 퇴근하고 오시면 식사를 준비해주는 일을 해주시고요. 김동식씨 활동보조인이 김동식씨와 친한 1층 형님의 활동보조인도 하고 계셔서 셋이 평소에 자주 만나고 계세요.

염전에서의 생활과 지금을 비교하면 무엇이 가장 바뀌었나요?

마음이 편해요. 주말에는 쉬고. 사는 집도 여기가 훨씬 좋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현재 염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임금 노동 피해를 받으신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길 바라시나요?

잘되면 좋겠어요.

후견인 지금 김동식씨는 4개의 소송 지원을 받고 계시요. 민사, 형사 소송 다 포함해서요. 2개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 소송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지만,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세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숫자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요. 그렇지만 그 때 피해받았던 일에 대해 염전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동의는 하세요. 염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셨어요.

직장에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이롱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후견인 직장에 다닌 기간을 전체로 치면 2년 반 정도, 3년이 다 되실거예요. 중간에 퇴사를 하신 기간도 있어서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은 야구 유니폼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유니폼에 단추를 달고, 다림질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도 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에는 만족하시나요?

일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후견인 유니폼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노동이 수반되죠.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다림질을 할 때는 서서 일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직장이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일하는 게 좀 힘들지만 나머진 다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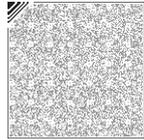
후견인 예전에 염전에 계실 때는 하루에 14시간도 넘게 일을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주말에는 쉬고, 쉬는 날에는 여행도 다니세요. 활동보조인과 1층 형님하고요. 1층에 산다는 형님은 지체장애가 있으신데 이 지역에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김동식씨를 많이 챙겨주려고 하세요. 출근 길에 장애인콜택시도 예약해주고, 주변에서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기도 하시고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 다른 염전 피해자 분들도 살고 계셔서 주말에 같이 놀러가기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클쎄요...

후견인 평소에는 여행 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최근에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이 좁다고 하시면서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적 2급 장애인을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153 노동력착취유인 등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부부사이로 청주시에서 소 수십 마리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발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소와 돼지의 사료를 주는 목장일과 밭일 등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소 중개인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농장 내에 있는 창고에 기거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9년 동안 피고인들의 농장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약 1억 8천여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들은 노동력착취를 위한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민사소송상의 조정결정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죄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에, B는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선정의견

김예원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하여 이른바 ‘청주 축사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00노예’라는 타이틀로 다수 보도되고 있다^(각주1). 이 사건도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줄어들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실제로 기소된 죄명도 6개였다.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이 기소된 것도 고무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다른 장애인 학대 사건에 비하여 검찰의 기소내용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판단하면서 짧지 않은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특히 유인죄를 계속범으로 인정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전체 기간(19년)으로 인정한 것도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목시적 주종관계를 고려한 좋은 판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하여 선고형이 낮은 점(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다)은 안타깝다. 재판부는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고인들이 악의에 기초하였다 기보다는 미흡한 인권의식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사유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경제적 물리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비장애인과 그에게 모든 면에서 종속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사이의 권력관계’ 라는 것을 외면하는 서술이기도 하다.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결에서는 유독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 준 비장애인의 온정과 선의’가 언급된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차별과 폭력, 억압은 그와 더불어 제공된 온정과 무관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임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된 온정의 양이 감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디 동등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잘 고려되어서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¹⁾각주 1) ‘노예’라고 명명하는 것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사람, 범죄 피해의 객체로만 존재하는 사람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테마 판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테마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9개 판결입니다.

1.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2575,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1008, 대전지방법원 2016나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4222 판결]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양형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 수원지방법원 2015노6622,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56, 수원지방법원 2016노1363 판결]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2575,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1008, 대전지방법원 2016나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4222

집필 취지

지적장애인의 휴대폰 명의도용, 대출사기, 금전적 착취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피해 사실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이러한 금전거래 피해는 단순히 장애당사자의 부주의함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보면 해당기관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장애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 재판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라 판결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목할 판결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테마’로 선정된 아래 4개 판결결과는 지적장애인의 금융 피해에 대하여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고려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거나 휴대폰 가입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였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상반된 판결결과를 보여주었다.

사건 진행과정이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올바른 접근방법이 무엇인지 아래의 주목할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1)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 근보증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근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사례

지적장애 3급인 원고가 제기한 근보증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IQ69에 운동협응기능이 8세 7개월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연령 10.8세 정도에 있어 근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그로 인한 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례

지능지수 47, 지적장애 3급인 원고는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휴대폰과 단말기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속아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 약 2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입신청을 한 점, 가입신청 이후 요금할인을 위한 결합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입 신청 당시 그 법률적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기각하였다.

3) 정신분열질환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정신분열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의사무능력자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주장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정적 판단을 한 바, 피고는 성년이 지난 무렵부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그 기간이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년이 넘어 피고가 당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

사실관계

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실시하였다.

4)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 체결한 거래약정은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체결로 무효이므로 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명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

원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X는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55이며 사회성숙도 지수가 약 8세 정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거래약정상의 채무의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

선정의견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사결정지원제도)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후견제도는 즉각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두었으나,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후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 것이다(가령 동의권 유보 없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따라서 향후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 체결한 계약 등의 효력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시점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늘어 날 것이다. 여기서 열거한 판결도 바로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만한 판결로 선정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한다고 하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그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주목한 판결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루어질 사건들이 대법원의 위 기준을 구체화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모든 성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추정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능력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장애(지적장애), 질병(치매, 정신질환 등), 연령 등이 있을 때 비로소 의사능력이 있는지 유무를 미리(당해 거래를 체결하기 이전에), 그리고 사후적으로(재판으로 과거의 행위의 효력을 다룰 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판결 모두 장애 여부를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선정의견

둘째, 질병이나 장애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 판결 중 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지능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능이 얼마이고, 사회적 연령이 얼마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다는 식의 이유 설시는 장애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스티그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 둘째를 대신하여, 지능이 낮더라도 쉽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연령이 낮더라도 조력인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때에는 당해 거래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설명하거나 조력인이 동반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지능이나 사회적 연령 등으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어느 정도의 가능성인지를 검토), 그렇기 때문에 당해 거래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거래는 무효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을 위한 실무상의 실천방향, 제도도입 방향이 정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위 대구지법의 휴대폰 개설계약의 효력을 검토할 때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휴대폰계약개설계약을 체결하여 친구에게 주는 것의 의미(따라서 자기가 부담하게 될 휴대폰 비용이 얼마일지에 대한 이해), 자신이 30만원을 받는 것의 의미를 알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계약을 체결하였다든지, 신분증을 자신이 주었다든지, 결합할인신청을 하였다든지, 분실신고를 하였다 는 것만으로는 위 휴대폰개설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인 차별상담을 진행하며 우리사회의 장애인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활동하고 계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법 제정 이후에는 연대단체를 해산시키지 않고, 사무국을 독립시켜서 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과 세부적인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인권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소는 2009년에 개설해서 장차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국의 52개 지역에서 상담전화(1577-133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인권위 진정, 행정소송 등 모든 체계를 지원합니다.

상담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 옹호에 대한 인권교육도 진행하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피해, 금융거래 피해 등 금전적 피해 상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상담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금전적인 사건이 전체 피해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금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 대출, 대포통장에 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대출 전화라고 속인 후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킵을 불러 통장을 가져갑니다.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피해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

인터뷰

을 차지하고 있는 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른 금전적인 피해로는 활동보조인, 이웃에게 현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회 사람들이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져가고 가져간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집을 얻어주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을 주제로 한 이번 테마 판결을 보면, 동일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사자들의 인지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 만으로는 인지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경우에도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의사결정에 무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장애가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지양해야 될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사능력을 낮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티가 잘 안 나고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인권감수성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결국엔 양쪽의 태도 모두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편견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상황을 판단해보고 보편적인 생각과 다를 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정신장애영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와 근거에 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활동하시면서 유사한 사례를 지원하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통장 사건인데, 당사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이 과거에도 이미 같은 사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형사처벌로 가기 직전에 저희 단체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았습다. 그 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를 해줬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민사소송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가해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점은 장애인이 금전 피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상담사가 붙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장 속상합니다. 상담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초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체계상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적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 유형도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핸드폰 사기 피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권리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관심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인터뷰

특히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보편적인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단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권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제한을 담고 있는 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잃을까봐 외양간을 막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가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항상 제 개인정보를 드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돈을 달라고 안하죠.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숙지하는 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그 과정이 촘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체계 안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양형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815, 수원지방법원 2015노6622,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56, 수원지방법원 2016노1363

집필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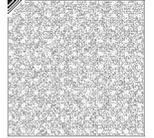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는 잇을만하면 등장하며, 거주시설에서의 뿌리깊은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는 여러 가지 양형 감형사유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지적장애인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였던 종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단순한 종사자 처벌 문제가 아니다.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장애인을 보호와 관리대상으로 바라보고 훈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용인해버리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정된 아래의 5개 판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은 것으로, 법원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감금 행위에 대해 양형요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1) 재활원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재활원 생활교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끌고 가거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밀었으며 오른손으로 C의 손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D 발등을 밟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으며 랜턴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동 재활원 생활교사인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베란다로 내밀고 문을 잠가 가둠으로써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감형요소 ①범행의 동기에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2)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가 26회에 걸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했음에도 낮은 형량이 나온 사례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A를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1년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감형요소 ①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는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목사부부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상습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 A는 oo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처로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을 운영

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시설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평소 자신들을 두려워하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걸이에 고무와 철사를 삽입하는 일, 나사 조립하는 하는 일 등의 작업을 시켜 장애인복지법위반, 강요, 상습폭행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 오행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감형요소 ①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강요 범행에 따라 얻는 이익이 크지 않으며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을 수회 찔러 소위 ‘똥침’을 가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위 시설 거주자인데 팔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어깨 부위를 걷어 차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에게 양팔을 움직일수 없게 되는 일명 ‘제압복’을 강제로 입히고 감금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들은 oo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로 일명 제압복(소매의 길이가 2미터 가량이며 소매의 끝이 막혀있는 상의로 제압복을 입히고 양 소매를 뒤로 돌려 묶으면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됨)을 구입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총 52회에 걸쳐 이를 강제로 입힌 후 방에서 나오지 못

사실관계

하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학대함과 동시에 감금하여 감금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2년,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감형요소** ①피고인 000가 시설장에서 물러난 점
 ②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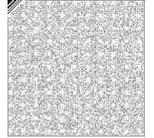
배복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감금, 착취 등의 학대사건의 판결문(5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양형사유에서 감경요소로 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점’ 등장한다.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시설거주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사건에서는 유독 피고인의 훈육, 교육, 보호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양형사유 내용이 다수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시설거주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훈육, 보호, 교육, 관리, 감독 등을 한다. 시설종사자와 거주하는 장애인들간의 관계는 보호관계 및 권력관계가 작동된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나 감수성은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설종사자 스스로 자신의 인권의식이 어떤지 파악하고 시설거주 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동이 발생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종사자와 시설거주 장애인간의 역동이 평등과 존중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의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돌발행동을 하거나 상황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대처방식이 높은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의 통제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위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의 범행 동기와 이유가 ‘훈육, 보호, 교육’ 등의 목적이라는 점은 시설종사자의 개인의 통제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다. 그래서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 시설종사자의 시설 내 장애인대상 학대사건을 판결하는 재판부는 ‘훈육, 보호,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판부가 아래의 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선정의견

1) 재판부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대한 이해를 높여야.

위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각 재판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수동적이고 도움을 받는 존재라고 여기고 ‘보호하고 관리 받는 대상’이라고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자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경우에 제한된 공간에서 좁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로 인한 돌발행동도 있겠지만 시설이라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제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설종사자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행위에 대해서 통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통제수단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인지상 장애가 있거나 신체상 장애가 심하여 스스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방어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 혹은 소통에서 위축감을 갖게 되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장애인이 자신의 행동을 폭력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상의 경험은 폭력이 몸으로 학습된다. 보통의 사람들은 폭력과 학대의 경험은 비밀상적이고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폭력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폭력을 쉽게 수용하게 되고 매일의 일상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거주 장애인의 돌발행동, 도전행동, 문제행동 등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통제방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존중받는 경험과 설명을 듣는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종사자가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해서 재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훈육, 보호, 교육 등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폭력으로 일상통제를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재판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재판부는 제한된 환경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버려진 장애인이 살아가는 곳이 장애인거주시설이고, 인가된 시설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종사자들은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시설 안에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규범적이고 보수적인 관리체계 안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훈련받거나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신변처리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도 하다. 그래서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일정한 범위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 ‘제재적 성격으로서,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범행의 동기에 훈육의 목적 등’ 등의 감경사유가 인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시설과 시설종사자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설이 개방되고 지역과 연계되어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시설종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태와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판시해야 한다. 시설과 시설종사자가 어떤 태도와 인식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핀다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요소가 될 것이다.

3)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 사건은 다양한 측면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야.

재판부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대상 학대 및 폭력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①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위치에 따른 학대의 일상성 여부, ②피해 장애인의 정신적 장애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③장애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④피해당시에 장애인의 방어능력, 결정능력, 표현능력 등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판부는 종합적인 검토로 인해 가해자의 폭

선정의견

력의 의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인권침해와 연결되어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의 감경요소를 검토하면서 재판부가 시설내 장애인학대 사건이 선의로운 일을 하는 시설 종사자의 잠깐의 실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앞으로 장애인시설 학대사건을 재판할 때, 보호의 목적으로 강압적 통제는 폭력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지하기를 바란다.



인터뷰

김병용/장애인권리옹호센터 '뭉소리' 센터장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뭉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장 김병용입니다. 저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과 인권옹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소수자 인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활동을 시작했던 2007년 즈음 전북에는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는 많이 있었지만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전북시설인권연대'라는 장애인거주시설 감시활동과 거주인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장애영역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활동하는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조직을 전환하여 전북지역의 장애를 가진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매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서울의 인권운동사랑방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로도 활동하며 지역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는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센터장으로 좀더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옹호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와 비리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위 활동을 만들어갔으며 대표적인 활동으로 전주 자립복지재단 성폭력대책위와 남원 평화의집대책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양형사유'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주신다면?

선정된 판결 결과는 대부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그 이유로 전문인력 배치

인터뷰

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범행의 동기가 혼운 목적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받아들인 판결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목적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인식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신고시설이라는 불법시설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이 착취된 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 시설장교체나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이 감형요소로 적용되어선 안되고 별 건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정된 판결의 양형사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에 혼운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주신다면?

앞서 밝혔듯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강제 신체를 강박하는 등의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장애를 가진 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혼운의 목적으로 일정부분 폭행을 가할 수 있다. 자해를 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다. 보호자들이 장애인을 해당시설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식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거론하는 내용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봐도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낮은지를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렇듯 장애로 인한 돌발행동이나 장애의 특성을 이유로 인권침해가 정당화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언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그 상황이 제거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거나 주변을 맴돈다거나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



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한 특성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해결되기보다는 반복되고 폐쇄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공간에서 아무리 감수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수일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로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 등일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면 일하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자는 물론 모든 관계자들이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해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종사자에 의한 이용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기관의 ‘숨방망이 처벌’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되는 종사자에 의한 이용인 인권침해 사건의 판결이 전국 곳곳에서 죄의 심각함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는 현실입니다. 사법기관은 지금의 인식과 반대로 장애인이라는 점,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관련기관이나 사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관련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유형과 개별 장애인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 실증법에 글자 그대로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접근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나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관련 사건은 지속되고 있고, 사법부의 중요한 판결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작년 남원 평화의집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후 교육할 기회가 있어 당시 재판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시설에서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시설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더욱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설에서 집단생활하는 장애인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하며,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다양한 위치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국적인 판결을 분석하고 디딤돌, 걸림돌을 선정하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흩어져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두어져 집단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을 만나면 또 그들의 이유와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나름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건 사건만으로 파편화된 해결방법은 근본 대책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개별, 사회복지사 개별의 문제로 접근하여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운영상의 한계를 정확히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법인과 설립자 등의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영역이라는 점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권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해결책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행일 2017.11.10.

집필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김예원, 김용혁, 김재왕, 박김영희, 배복주, 제철웅, 최정규, 최현정

발행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전화 02-2675-5364 **팩스** 02-2675-8675

장애인권법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03호

전화 02-3476-8020 **팩스** 02-3476-8021

제작 리드릭 02-2269-1919

ISBN 979-11-85498-61-4

